

정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필요성에 공감한 노사정 합의에 따라 공짜노동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- 4.8.(수) 이데일리, 경총 “포괄임금 지도 지침, 노사정 합의 위배”... 정부에 강한 유감

2. 설명 내용

- 지난 12월 30일 노사정 및 전문가로 구성된 ‘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’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, ‘26년 상반기 근로기준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음
- 포괄임금 오남용은 실제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미리 정한 임금만 지급하는 관행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정액급제 개선 등과 함께 투명한 노동시간 기록·관리를 제도화하기로 하였음

〈「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」 노사정 합의사항(‘25.12.30.)〉

□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

- 실제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미리 정한 임금만 지급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(정액급제 개선 등)*, 투명한 노동시간 기록·관리 제도화**('26년上)

* 노동자 동의+불리하지 않은 경우 예외적 허용(사전에 수당을 포함해서 약정하되 약정시간에 미달해도 전액을 보장하는 반면, 약정시간을 초과하면 차액 지급)

** 임금대장에 근로일수 및 연장·야간·휴일 근로 발생 시 근로일별 그 시간수 기재)

- 이에 따라 금번 시행되는 「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」은 현행법에 따른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현장 지도 방안을 담았음

- ① 현행법상 임금대장·임금명세서에 근로시간수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사업주의 투명한 노동시간 기록·관리 의무를 명시하고,

- ②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본급과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(정액급제), 연장근로수당·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제 수당을 포괄(정액수당제)하여 산정·지급하여서는 아니되고,
- ③ 또한 당사자 사이에 이러한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산정된 야간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과 비교하여 약정한 금액이 이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함을 재확인하였음

담당 부서	고용노동부 노동정책관실 임금근로시간정책과	책임자	과 장	한진선 (044-202-7991)
		담당자	사무관	변재연 (044-202-7541)

